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9.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8호로 2013년 8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관련 경력경쟁시험 최종합격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 사무직렬 중 2013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 인원 18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대신 일반직 정원으로 18명을 상계 증원.

- 일반직 계 : 1,065명 → 1,083명 (증 18명)
- 기능직 계 : 210명 → 192명 (감 18명)

나.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채정기준(비율) 조정

①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 조정(안 제3조제2항 별표 2)

○ 일반직

- 7급 비율 “32% 이내”를 “33% 이내”로 개정 (증 1%)
- 9급 비율 “ 7% 이상”을 “6% 이상”으로 개정 (감 1%)

○ 기능직

- 7급 비율 “38% 이내”를 “42% 이내”로 개정 (증 4%)
- 8급 비율 “45% 이내”를 “48% 이내”로 개정 (증 3%)
- 9급 비율 “11% 이상”를 “ 4% 이상”으로 개정 (감 7%)

○ 별정직

- 7급 비율 “45% 이내”를 “51% 이내”로 개정 (증 6%)
- 8급~9급 비율 “21% 이상”를 “15% 이상”으로 개정 (감 6%)

②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에서 일반직계를 1,065명에서 1,083명으로, 6급이하를 996명에서 1,014명으로, 기능직계를 210명에서 192명으로 변경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경력경쟁임용 요건)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관련 경력쟁경 시험의 최종합격인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력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2013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 인원 18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일반직 정원으로 18명을 상계 증원

· 일반직 정원 : 1,065명 → 1,083명 (증 18명)

· 기능직 정원 : 210명 → 192명 (감 18명)

- 안 제3조제2항 별표 2에서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조정

▷ 일반직 공무원

· 7급 : 32% 이내 → 33% 이내 (증 1%)

· 9급 : 7% 이상 → 6% 이상 (감 1%)

▷ 기능직 공무원

- 7급 : 38% 이내 → 42% 이내 (증 4%)
- 8급 : 45% 이내 → 48% 이내 (증 3%)
- 9급 : 11% 이상 → 4% 이상 (감 7%)

▷ 별정직 공무원

- 7급 : 45% 이내 → 51% 이내 (증 6%)
- 8급~9급 : 21% 이상 → 15% 이상 (감 6%)

- 안 제4조 별표 3에서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이 996명에서 1,014명으로 18명 증원되어 일반직계가 1,065명에서 1,083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기능직계가 18명 감소되어 210명에서 192명으로 변경되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5월 11일자로 실시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관련 경력쟁경시험의 최종합격 인원 23명중 5명(8급)은 “1)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정원 조정분 중 미합격에 따른 결원인원” 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18명(7급)에 대하여 정원조정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1) 2012.03.08 조례 제874호에 의거 일반직 정원 30명(6급 1, 7급 12, 8급 16, 9급 1)을 증원하였으나 최종합격인원 부족으로 결원(미전환)인원 8명(6급 1, 8급 6, 9급 1) 발생

- 검토결과 동일직급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으로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우리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 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